

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(제29조제2항 관련)

해당 호	학년별 · 연도별 총학생수	모집단위별 총학생수
1. 제29조 제2항 제2호	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,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제29조 제2항 제3호	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,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(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8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100분의 30)을 초과할 수 없다.
3. 제29조 제2항 제8호		제29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4. 제29조 제2항 제9호	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

		수 없고,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5. 제29조 제2항 제11호		제29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6. 제29조 제2항 제12호		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7. 제29조 제2항 제13호	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.
8. 제29조 제2항 제14호	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·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,0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다. -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. -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,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,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,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